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3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고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희

변론 종결2020. 11. 25.

판결 선고2021. 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F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은

28,129,6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29,6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7. 9. 26.경 F과 사이에 원고는 3,500만 원을 이자 연 14.9%, 연체금리 연 10% 내지 연 12%로 정하여 F에게 대출하고 F은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2) 이후 원고는 F이 원리금상환약정을 위약하였다는 이유로 F을 상대로 원리금 합계 28,959,332원 및 그 중 원금 28,180,410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5862호로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위 법원의 2019. 4. 16.자 지급명령이 2019. 5. 3.경 확정되었다.

3) G은 위 지급명령 발령 후인 2019. 4. 24.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원고에게 대출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2020. 1. 9. 현재 채무액은 원리금 합계 28,129,642원(원금 25,749,502원, 이자 2,380,140원)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F은 2019. 3. 25.경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4. 24.경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9. 4. 29.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의 재산상태

1)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2)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 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H조합(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 I(채권최고액 7,000만 원), J(채권최고액 1억 원)에 대한 각 피담보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F과 사촌형제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F이 원고들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액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과의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당시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F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F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F의 채권자들에게 균등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사해의사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인 2017. 9. 26.경 당시 시세 4,86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3,5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2020. 6. 22.경 현재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연식의 동종 차량의 중고차 거래 시세가 2,690만 원에서 3,59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액이 이 사건 승용차의 당시 가액이나 저당권의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F의 재산처분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액을 상회하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그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지 못하여 환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안태운

별지